



제 435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30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 안 경 위	1
II . 제 안 이 유 및 주 요 내 용	1
III . 검 토 의 견	2
1. 중 소 기 업 기 술 침 해 행 위 에 대 한 벌 칙 규 정 신 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6.
3. 회부연월일 : 2026.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보호지침 제정,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술거래 활성화와 외부 협력 확대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침해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실효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¹⁾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안 제34조제1항 신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벌칙)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제34조(벌칙)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 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제35조(과태료) (생략)	<u>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36조(과태료)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²⁾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는 한해 299건으로, 평균 손실액은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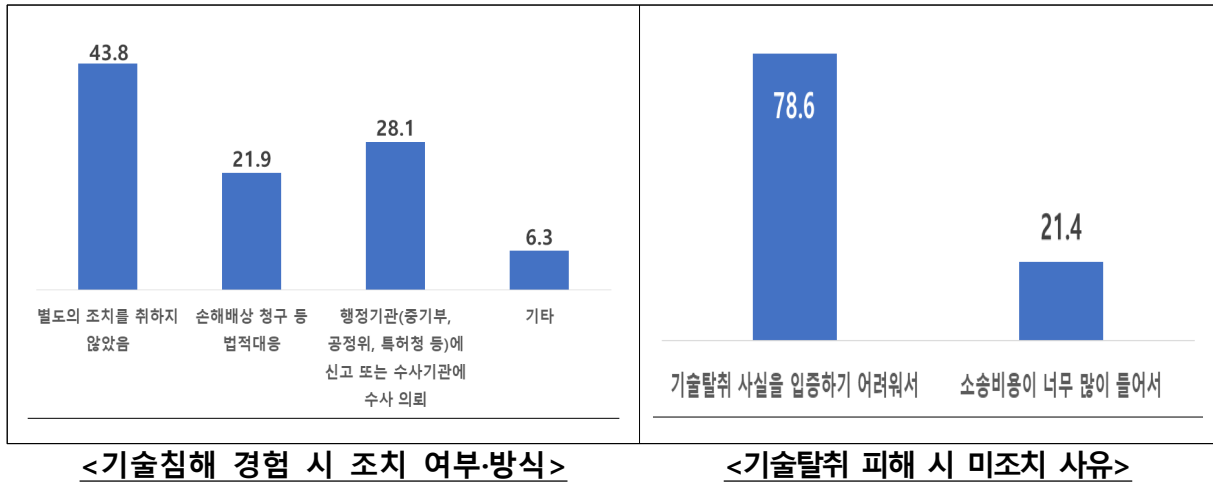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재판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해 승소율이 낮고³⁾ 소송 기간이 길며⁴⁾, 승소 시에도 손해액 인정을⁵⁾ 낮아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이 43.8%('23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2) 중소벤처기업부(2025.3.)

3) 최근 5년간('18~'22) 기술분쟁 사건 승소율(25.6%)은 전체 민사사건 승소율(55.6%)의 약 2분의 1 수준(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4) 판결(1심 기준)까지 1년이상 소요 기간: 민사 94.6%, 형사 77.5%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5) 민사사건 승소사건 중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청구액 대비 17.5%인 1.4억원 수준 (출처: 제4차(2025~20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태조사, 보호지침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안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예방적 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⁶⁾. 이와 동시에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⁷⁾, 기업 간 합의에 기반한 분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⁸⁾.

그러나 현행법은 기술보호 지원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역지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8조(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12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5조(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제16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8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9조(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등

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제24조(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으로써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다만, 기술침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률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의 침해행위 등에 대한 형사제재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적용상 중복 등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을 사용·누설·무단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⁹⁾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에서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
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
는 금액 이하의 벌금¹⁰⁾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
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
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
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
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
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

특히, 법률의 적용 관계를 하도급거래 및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한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일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비밀”¹²⁾의 요건을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¹³⁾

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1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 요건과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법률에서 영업비밀침해 또는 중소기업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중복적으로 규정할 경우 유사한 보호객체를 다루는 두 법률 사이에서 법률 적용상 중복의 문제가 더욱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표 1] 현행 기술보호법제 관련 제도 비교

구분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구제대상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기술자료 (하도급거래)	기술자료 (수탁·위탁거래)
기술보호 대상요건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침해행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공요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행정적 제재	• 행정조사 대상 • 시정권고·명령 • 공표	X	• 행정조사 대상 • 시정명령 • 공표 • 조시불응 시 과태료 • 전속고발 • 벌점부과 및 제재 • 과징금	• 행정조사 대상 • 시정권고·명령 • 공표 • 공정위 조치요구 • 조시불응 시 과태료 • 비밀유지계약 위반 시 과태료 • 벌점부과 및 제재
민사적 구제	X	• 손해배상(최대 5배)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최대 5배)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

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구분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형사적 제재	• 침해행위 시 5억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침해행위 시 5억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영업비밀의 해외반출 시 15억원 이하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	• 침해행위 시 하도급 금액의 최대 2배 벌금 • 시정명령 불응 시 1.5억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불응 시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개정안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 행위는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개정안보다 높아 개별입법의 실익이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기술탈취는 “가해행위의 불법성”이 본질인데 해당기술을 중소기업이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처벌근거를 두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서의 보호대상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대상과 동일하며,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¹⁴⁾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제재와 현장 혼란이 우려되어 신중히 검토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